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기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03 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 오기형・이기헌・박홍배

임광현 · 허성무 · 김우영

황명선 · 조계원 · 한민수

김남근 • 천준호 • 김영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강남북간 재정격차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음.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최대 15배 가량에서 6배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었음.

그런데 이 제도 시행 후 15년 이상 지난 현재, 강남북간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. 2022년 기준 각 자치구의 재산세수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8,354억 원, 도봉구의 경우 321억 원으로 약 26배의 격차를 보임.

이에 재산세의 특별시분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5 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,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 고자 함(안 제9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전단 중 "100분의 50"을 "100분의 60과 100분의 40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	제9조(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
의 공동과세) ① (생 략)	의 공동과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	2
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	
산세와 구(區)분 재산세는 각각	
「지방세법」 제111조제1항 또	
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	
재산세액의 <u>100분의 50</u> 을 그	<u>100</u> 분의 60과 100
세액으로 한다. 이 경우 특별시	분의 40
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	
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	
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	
통세인 구세로 본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